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79조에 의거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① 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교직원, 학생, 학부모추천 외부전문가, 동문,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1. 12. 8, 2020. 4. 14.)

1. 교직원 : 4명
2. 학생 : 3명
3. 학부모추천 외부전문가 : 1명
4. 동문 : 1명
5. 학부모 대표 : 1명

**제3조 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의2 (등록금의 산정)** ① 등록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,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,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계획, 등록금 의존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②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게 인상한다.

[본조신설 2018. 3. 2]

**제4조 (위원장 등)**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교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총장이 선임하고,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총학생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선임하며, 학부모추천 외부전문가 위원, 동문 위원, 학부모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 4. 14.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(신설 2022. 2. 7.)

**제5조 (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총장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4/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(개정 2022. 2. 7.)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유선 및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고,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목적과 일정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(신설 2020. 4. 14.)

**제6조 (회의록 작성 및 공개)**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②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5년간 공개한다.(신설 2018. 3. 2., 개정 2020. 4. 14.)

[제목개정 2018. 3. 2]

**제7조 (사무관장)**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에서 관장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8. 2. 23,

2019. 8. 1.)

**제8조(비밀유지의무)** 위원장,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,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본 대학교에 제반 손해가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5. 5. 1)**

①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기획예산팀’을 ‘기획팀’으로 한다.

**부 칙(2018. 2. 23)**

①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기획처 기획팀’을 ‘재무처 예산팀’으로 한다.

**부 칙(2018. 3. 2)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9. 8. 1)**

①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재무처 예산팀’을 ‘기획처 기획예산팀’으로 한다.

**부 칙(2020. 4. 14.)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